

의안번호	2218692
의 퇴 인	이언주의원
회 답 일	2026.07.22.
추계번호	26C2413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학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통학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 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 하여야 한다(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5조 (통합운영계획의 수립 등)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안전 및 편의 증진 등을 위한 통학지원 을 위하여 매년 학생통학지원 통합운영 등에 관한 계획(이하 “통합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3	안 제6조 (학생통학지원심의 위원회의 설치 등)	학생의 통학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으로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1항).	의무규정
4	안 제7조 (통학비용 지원 대 상 등)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이하 “통학 비용 지원 대상자”라 한다)을 제10조에 따른 통학비용의 지원 대상으로 한다(제1항).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 교육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이 발생한 지역의 학생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지역의 학생 4. 학교 통폐합과 신설·대체이전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따라 통학지원이 필요한 학생 5.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을 임시배치하는 학교에 통학지원 이 필요한 학생 6. 원거리 또는 안전 미확보 등의 이유로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7. 지형적 여건이나 대중교통 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 여 통학이 곤란한 학생 8. 지리적·경제적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의한 학생 에 대하여 교육감이 통학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9.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8조 (통학지원 정보체 계의 구축·운영)	교육감은 학생통학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학비용 지 원 대상자의 통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학생 통학지원 정 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6	안 제9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매년 관할 구역 내 학생의 통학 거리, 대중교통의 여 건 등에 관한 학생 통학 안전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항).	의무규정
7	안 제10조 (통학비용의 지원등)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에게 대 중교통 이용권을 지급하거나 통학에 필요한 교통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8	안 제11조 (보통교부금 산정 에 관한 특례)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산정 시 각 교육청의 통학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9	안 제12조 (경비의 보조 및 전출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통학지원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책무)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 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5조 (통합운영계획의 수 립 등)	
3	안 제6조 (학생통학지원심의위 원회의 설치 등)	
4	안 제7조 (통학비용 지원 대상 등)	
5	안 제8조 (통학지원 정보체계 의 구축·운영)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6	안 제9조 (실태조사)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7	안 제10조 (통학비용의 지원 등)	
8	안 제11조 (보통교부금 산정에 관한 특례)	
9	안 제12조 (경비의 보조 및 전출 등)	

2. 상세 사유

-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계획 수립,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학생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지원체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 제정안 시행으로 학생 통학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통학 차량이 운영되거나 통학비가 지원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2¹⁾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²⁾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지방비를 통해 통학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 또한, 교육부는 행정구역 면적 및 도서·벽지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를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인 ‘지역 간 균형교육복지 지원비’ 산정 지표로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시·도교육청의 통학 지원을 보조하고 있음
- * [참고자료 1] 시·도교육청 통학 지원 조례 현황
- * [참고자료 2] 시·도교육청별 상세 지원내역

-
-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통학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경비와 체험학습비 등 부대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그러나 현재 개별 교육청이 조례에 따라 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이미 수행하고 있고, 현시점에서 제정안에 따른 신규 지원 대상자의 규모, 지원 단가 및 방법 등에 대한 불확정적이므로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안 제3조)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통학 지원 방안 및 행·재정적 지원 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한 선언적 성격의 규정에 해당하여 추가재정소요 추산에 한계가 있음
- (안 제5조 내지 제12조) 개별 교육청이 조례에 따라 자체적인 통학지원 사업([참고자료 2]에서 확인),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을 운영하고 있고³⁾, 제정안에 따른 통학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지원 단가 및 방법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재정지출의 순증가분만을 산출하는 데 제한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3)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통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통학 지원의 기본방향
2. 통학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통학차량 관련 안전대책
4.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별 통학 지원 형태에 따른 지원 현황, 학생 통학 현황 및 안전대책 등 통학 지원과 차량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를 포함할 수 있다.
제8조(본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① 교육감은 통학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본청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략)

② 본청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학 지원 기준
2. 통학 지원 방법
3. 그 밖에 통학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본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6. (생략)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경기도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본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문지은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

[참고자료 1] 시·도교육청 통학 지원 조례 현황

구분	통학 지원 조례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통학편의 지원 및 차량운영 지침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대구	대구광역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울산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추진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전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시·도교육청 제출

[참고자료 2] 시·도교육청별 상세 지원내역

시도명	주요 내용
강원	· 농어촌 및 벽지 학교 및 유치원, 특수학교 학생 대상으로 통학버스 운영 · 특수학교 학생 대상 버스 요금 지원, 통·폐합학교 학생 대상 버스·택시 요금 및 유류비 지원
경기	· 통학거리, 통학환경, 개교지연 여부 등을 고려하여 통학버스 임차비 지원, 기존 자차 보유학교의 경우 임차 전환 시까지 자차 운영비 지원
경남	· 단설유치원, 원거리 초·중학교 대상 통학차량 운영 · 통학차량과 기준이 동일하나, 기준인원 12명 이하인 경우 통학차량을 대체하여 통학비 지원
경북	· 통학거리, 승차인원, 운행횟수, 운행시간 등을 고려하여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 통학차량이 지원되지 않는 통·폐합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광주	· 통학거리, 통학시간 등을 고려하여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 농촌학교, 통·폐합학교, 신설학교 학생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
대구	· 통학거리, 공동통학구역 운영, 통·폐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대전	· 유치원, 특수학교, 원거리 통학 학생, 임시배치교 학생 대상 통학차량 운영 · 특수학교 학생 대상 통학비 지원
부산	· 농어촌학교 학생, 원거리 통학 학생 대상 통학차량 운영 · 통학비 지원은 없으나, 만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대중교통 무상 운영
서울	· 통학여건, 차량 수요 등을 고려한 통학차량 운영
세종	· 읍면지역 거주 학생, 특수학교 학생 대상으로 교통여건, 학교 의견 등을 고려하여 통학차량 배치 · 학교 소재지와 학생 거주지가 서로 다른 읍면 지역인 경우 통학거리, 버스 배차간격 등을 고려하여 택시비 지원
울산	· 원거리 통학 학생이 20명 이상인 초등학교, 통·폐합학교 학생 대상 통학차량 임차료 지원 · 원거리 통학 학생이 20명 미만인 초등학교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
인천	· 통학거리, 통학로 안전 등을 고려하여 통학버스 운영 · 학교별 특성과 통학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통학로 학생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에 통학도우미 배치, 교통안전지도사 동행하여 등하교 시 교통지도 실시
전남	· 거주 지역, 통학거리 등을 고려하여 직영·임차 통학차량 운영 · 통·폐합학교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 통학비, 유류비 지원
전북	· 통학거리를 기준으로 학생 수요에 따라 통학버스, 통학택시 지원 · 농어촌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대상으로 택시비 지원
제주	· 읍면지역 학교를 비롯한 통학 불편 학교의 수요조사를 통해 통학버스 운영 · 원거리 통학 학생 대상 통학비 지원

시도명	주요 내용
충남	· 학생 수, 통학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되, 통·폐합학교와 특수학교 학생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여 공용·임차 방식으로 운영 · 통·폐합학교 학생 대상 통학비 지원
충북	· 통학거리, 학교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통학버스, 통학택시 지원 · 부득이하게 통학차량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통학비 지원

자료: 시·도교육청 제출